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632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5.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652,6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652,6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2. 18.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3. 3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전623 결정). 위 확정지급명령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액은 2023.

4. 5. 기준 31,582,763원이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가 2019. 5. 31.경 사망함에 따라 D, 피고를 포함한 5인의 자식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들 사이의 2019. 5.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7.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07년경부터 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을 변제함에 따라 2021. 4. 9.경 말소되었다.

- 원고는 위 확정지급명령에 기하여 2023. 2. 9.경 D의 G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확정지급명령채무를 부담할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1,263,395원이고, 여기에 D의 상속분 1/5을 곱하면 2,252,679원이다.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 202,000,000원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을 공제하면 102,000,000원이고, 여기에 D의 상속분 1/5을 곱하면
20,4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652,679원(= 2,252,679원 +
20,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즉 D에 대한 확정지급명령채권은 2013. 3. 30.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 ②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 ③ H 유한회사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2504호). 따라서 설령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액배상
한도금액 22,652,679원을 원고의 채권액(31,582,763원)과 H의 채권액(75,237,665원)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6,697,540원(= 22,652,679원 *
31,582,763원/106,820,428원)이다.

다.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 대하여 확정지급명령채권을 가지고, 지급명령확정일인 2013. 3.
30.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D의 G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압류 당시 D의 G조합 계좌에는 잔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①번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D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1/5 지분을 피고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 등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D이 형제인 점, D이 별다른 대가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②번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없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나, 피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에 비추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652,679원(원고 주장의 계산식 참조)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652,6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D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본 사건에서 원상회복을 명함이 있어 위 취소금액을 원고와 위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③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예혁준

별지